

1. 개정이유

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사생활 유출 등 홈네트워크에 대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홈네트워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2. 주요내용

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'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'를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(안 제11조, 별표2)

- 1) 홈네트워크 설비는 입주민 안전과 직결됨에도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미흡
- 2)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물(제11조 제1항),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 및 진단사항(별표2)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하여 계획적·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자 함
- 3)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

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안전진단	변전실, 고압가스시설, 도시가스시설, 액화석유가스시설, 소방시설, 맨홀(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), 유류저장시설, 펌프실, 인양기, 전기실, 기계실 및 어린이 놀이터	매분기 1회 이상.
	승강기	「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	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	매월 1회 이상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) ① 영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(생략)	제11조(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</u> ② (현행과 같음)